



중소기업 공동상표 활성화시킨다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

중소기업청(廳長, 崔 棟圭)은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지원되어 왔던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범위를 앞으로는 비제조업 분야의 모든 중소기업 업종으로까지 대폭 확대하여 추진주체의 상표 1건당 2천만원씩 지원, 이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제도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공유하고, 품질 및 디자인 등의 공동관리를 통하여 제품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금 및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동 제도의 운영규정인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을 대폭 개정, 금년 8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동 지원요령의 개정에서는 산업발전과 업종의 전문화, 세분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정보와 유통분야까지 그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우수 공동상표를 발굴·육성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제품이 일정한 품질수준에 이르는 경우, 동 제품과 포장 등에 정부가 인정한 공동상표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활성화에 공동상표 운영의 중점을 둔 것이 특색이다.

중소기업 공동상표지원요령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등록 활성화와 우수공동상표 발굴·지원을 위해 무도장, 골프장·스키장, 도박장 등 본래 공동상표 운영의 취지에 어긋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시·도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상표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은 물론 신청서류도 크게 간소화하고(첨부서류 : 6종 → 2종) 아울러 공동상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동 상품의 신뢰도를 높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인정한 공동상표 확인증을 교부하고 제품 또는 그 포장이나 홍보물 등에 공동상표 제품임을 표시·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공동상표제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휴·폐업 중에 있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해당업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공동상표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업계를 대상으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대책 수립·실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의 공동상표지원요령 개정과 함께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활성화를 위하여 업계에 공동상표 운영 매뉴얼 작성·배포와 전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공동상표 개발·지원을 위한 정부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현재 21개 추진주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23개 공동상표가 앞으로는 상당히 증가되어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중소기업공동상표 지원제도 개요

■ 법적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 15조 제2항(연계생산지원사업) 및 동 법시행령 제16조(공동상표지원기준)
-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중소기업청 고시)

■ 공동상표 개념

○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공유하고, 품질·디자인 등의 공동관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며 상표이미지를 부각시켜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

략임

- 공동으로 상표개발, 홍보, 시장개척에 따른 비용과 위험감소
- 참여 중소기업간 경영 및 기술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수단
- 자기상표 수출체제 구축으로 고부가가치화 실현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공동상표 추진주체(지자체, 조합, 단체, 업체 등)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

-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 편성·실시

○ 주요 지원내용

- 공동상표개발비용 지원 : 추진주체의 상표 1건당 2천만원 이내
- 공동전시·판매장 등 협동화사업자금 지원 (중진공)
-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참가 우선지원 등